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안 번호	8 2
----------	-----

제출일자 : '94. 3. 7
제출자 :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으로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화 추진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 및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등에 관하여
심의·조정 하기 위함 (안 제2조)
-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토록함 (안 제3조)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음 (안 제6조)
-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정보제공, 의견제시등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4,166호. '94.2.16)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협의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제화추진업무 담당부서의 국제화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
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